

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1.

발 의 자 : 정동만 · 구자근 · 이양수
박상웅 · 김선교 · 이종배
이인선 · 김용태 · 김위상
김승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에 대하여 운영 종료 이후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승인을 시작으로 해체절차가 진행 중임.

현행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「원자력안전법」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하여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고 있으나, 현행법에 따라 수집·보유·관리 및 공개·제공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상황별 방사선 관리, 폐기물 관리, 작업자 안전관리 등 정보가 포함되는지 범문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개념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해체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한 공개를 촉진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

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).

법률 제 호

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“허가”를 “허가 및 해체승인·해체상황 등 해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